

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산을 문산리 35-17번지에 설치된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문화증진에 축척된 경험과 인력을 바탕으로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공무원 증원요인 해소와 청소년의 보호·육성 및 문화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민간위탁의 범위를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전반
- 나.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- 다.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동의안은 지난 제48회 제2차 정례회의시 의결한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(위탁운영) 및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등) 제3항 그리고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명시된 사항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지 방 자 치 법

제95조(사무의 위임등)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중 調査・檢査・檢定・管理業務등 住民의 權利・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法人・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.

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나. 내용타당성

-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목적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5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
-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기준에서와 같이 운영코자 하는 모든시설의 사용료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시중 사용료에 비하여 아주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내용타당성에는 문제점이 없으나,
- 민간위탁 운영시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점을 고려하여 조례 제13조에 규정에 의거 손익계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토록 하여야 함.